

서울특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0. 3.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I .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sup>1)</sup>

- 「202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0년 3월 19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 II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9조 5,728억원 대비 1.9%, 7,348억원을 증액한 40조 3,077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2-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①=②+③	②	③			
총 계 규 모	39,572,894	39,535,913	36,981	40,307,734	734,840	1.9
일반회계	26,904,157	26,893,391	10,766	27,624,583	720,426	2.7
특별회계	12,668,737	12,642,522	26,215	12,683,150	14,414	0.1

-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7,204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 지난 ①'1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중 3,429억 1,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요청하고, ②국고보조금등 3,775억 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는 144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19회계연도 잉여금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52억 7,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요청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39조 5,728억원 9,400만원) 보다 1.9%, 7,348억 3,9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바,

- **일반회계**의 경우,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245억 7,600만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2,000억원) 등 28개 세부사업에 대해 금번 추경을 통해 7,204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6개 세부사업에 대해 금번 추경을 통해 144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Ⅲ . 세입예산 관련 검토

####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1) 지난해회계연도 잉여금에 대한 세입처리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1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결산상 잉여금중 3,429억 1,6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19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발생할 결산상 잉여금은 2조 3,044억 3,300만원이나 자치구·교육청·타회계 진출, 감채기금 적립 등 법정전출을 제한 가용재원을 5,992억 7,400만원으로 제출한 바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결산상 잉여금중 3,429억 1,6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관련법령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어 동 **순세계 잉여금**의 결산전 이입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

(2)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등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4조 9,948억 4,100만원)보다 7.5%, 3,775억 900만원을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 중앙정부의 내시와 정부추경 등에 따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1,712억 500만원 증액)을 포함한 9개 내역에 대해 추가교부될 국비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자 동 세입과목 중 국고보조금을 기정예산(4조 7,538억 5,400만원)보다 7.9%, 3,775억 9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증액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 액	추경예산(안)	증 액 편 성 내 역
국고보조금등	4,994,841	377,509	5,372,350	
국 고 보 조 금	4,753,854	377,509	5,131,3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71,205</li> <li>◦ 아동양육 한시지원 166,307</li> <li>◦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4,123</li> <l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12,693</li> <li>◦ 가정양육수당 지원 5,152</li> <li>◦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5,000</li> <li>◦ 보건소 구급차 지원 2,467</li> <li>◦ 아이돌봄 지원 360</li> <li>◦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숙) 201</li> </ul>

## 2.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 (1) 잉여금에 대한 세입경정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하는 결산상 잉여금(599억 1,500만원)중 8.8%, 52억 7,300만원을 세입과목인 **순세계잉여금**에 편성요청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하는 결산상 잉여금(1,240억 3,000만원)중 7.3%, 91억 4,000만원을 세입과목인 **순세계잉여금**에 추가로 증액 편성 요청하는 것임

〈표 3-2〉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증액	추경예산(안)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9,915	-	5,273	5,273
교통사업특별회계	124,030	27,160	9,140	36,301

## IV. 세출예산 관련 검토

### 1. 국비 추가교부 (국비만 증액편성)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된 세부사업중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포함한 5개 세부사업은 국비만 증액편성을 요청한 사업임

〈표 4-1〉 국비 교부에 따른 추경편성요청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예산(안)
복지정책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x-) -	(x171,205) 171,205	(x171,205) 171,205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양육 한시 지원	(x-) -	(x166,307) 166,307	(x166,307) 166,307
복지정책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x76,538) 165,839	(x14,123) 14,123	(x90,662) 179,962
시민건강국	보건소 구급차 지원	(x-) -	(x2,467) 2,467	(x2,467) 2,467
복지정책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 직 속)	(x1,627) 5,424	(x201) 201	(x1,829) 5,626

- 특히, 보건소 구급차 지원을 제외한 4개 세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양육가정, 노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권 구매와 관련된 사업인 바,

- 금번 정부추경에 포함된 상품권 관련 예산의 경우에는 부대의견을 통해 상품권이 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통기한 단축방안과 취지에 맞는 사용처 범위를 지자체장과 협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예산집행시 별도 지침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대응편성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된 세부사업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포함한 4개 세부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대응편성되는 사업임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소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은 금번 추경안을 통하여 기정예산(6억 3,600만원)보다 205억 4,600만원(국비 126억 9,300만원, 시비 78억 5,3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정부부처가 2020년도 생활지원비 지원 국고보조금 133억 2,900만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대응되는 시비 78억 5,3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소요예산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요청하고 있으며, 매칭되는 시비중 일부를 예비비로 추가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은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기준을 통해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긴급재해의 대책'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의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사안으로 사료됨



〈표 4-2〉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대응편성요청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국비		추경(안)
				국비	시비	
복지정책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x636) 636	(x12,693) 20,546	12,693	7,853	(x13,329) 21,182
경제정책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x-) 0	(x5,000) 20,100	5,000	15,100	(x5,000) 20,100
여성가족정책실	가정양육수당 지원	(x103,495) 192,040	(x5,152) 9,559	5,152	4,407	(x108,647) 201,600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 지원	(x18,844) 45,015	(x360) 780	360	420	(x19,204) 45,795

### 3. 시비 증액

#### (1) 시비 증액 총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순수 시비만 편성 요청한 사업은 총 25개 세부사업으로,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시비 2,000억원 증액)을 포함한 14개 신규사업에 시비 2,744억 4,4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시비 462억원 증액)을 포함한 11개 계속사업에 시비 551억 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 추경예산안 중 시비 증액편성 사업 총괄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수	기 정 예 산	증 액	추경예산(안)
	계	25	(X739) 342,315	329,549	(X739) 671,864
	신 규 사 업	14	-	274,444	274,444
	계 속 사 업	11	(X739) 342,315	55,104	(X739) 397,419

(2) 세부사업별 검토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p.32)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기정예산(90억원)보다 36억 6,500만원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 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3개월간 추가인력(50명)을 투입하고, ②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영세 저신용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하고자 **출연금**을 기정예산(90억원)보다 36억 6,5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 예산	증 액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출 연 금	9,000	3,665	12,6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 지원인력 추가투입 665</li> <li>◦ 대환대출 특별보증지원 재원 3,000</li> </ul>

- **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동 사업의 경우, '20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관련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이 있음
- 동 출연금 편성요청과 관련된 동의안이 지난 3월 19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확인됨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사업별설명서, p.43)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은 코로나 피해기업 융자지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재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기금전출금 462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하는 것임
  - 동 기금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사업중 **중소기업금융지원**을 50억원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음
  - 동 기금의 경우, 이미 지출금액중 50억원이 증액된 바 있고, 금번 추경안을 통해 462억원 추가로 증액될 경우 지출금액이 의회가 의결한 당초 지출금액 보다 19.6% 증액되어 관련법령에 따른 의회의 의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됨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사업별설명서, p.48)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소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상가 건물 점포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23억 5,6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우리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제언 및 의결하여 재난발생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 동 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회가 마련한 지원근거에 따라 임대인에게 ① 건물 보수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6,20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00만원을 포함한 5억 8,800만원을 편성요청 하고, ② 방역 및 전기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억 3,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은 물론 ③ 모바일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착한 임대인 건물”을 홍보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억 3,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5〉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	2,356	2,356	
사무관리비	-	135	135	◦ 부동산 앱 홍보 135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1,658	1,658	◦ 건물보수비용 보조 공증료 26 ◦ 전기안전점검 지원 562 ◦ 방역지원 1,070
자치단체 자본보조	-	562	562	◦ 건물보수비용 보조 562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사업별설명서, p.55)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소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으로

-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하게 된 소상공인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휴업기간 동안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요예산(9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6〉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975	975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매장 휴업기간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 39만원(일평균 임대료 18만원+ 일평균 인건비 21만원) × 5일 (평균 휴업일수) × 500개 매장 975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사업명칭 부여시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은 지원대상이 소상공인과 가맹점사업자임에도 세부사업명을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으로 부여하여 소상공인과 가맹점사업자가 아닌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사업명칭 부여기준을 벗어난 사례에 해당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관련**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사업별설명서, p.66)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 (사업별설명서, p.81)

○ 서울시는 '20년 3월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대책으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바,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은 기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른바 재난 긴급생활비 소요분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으로 전출하고자 기금전출금 2,000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하고,

〈표 4-7〉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기금전출금	-	200,000	200,000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00,000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소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보조 및 단기근로인력 지원 등 사업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5억 7,6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8〉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과목	기정예산	증액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24,576	24,5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근로 인력 지원 4,247</li> <li>◦ 사업 홍보 등 지원 1,275</li> <li>◦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보조 16,355</li> <li>◦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2,698</li> </ul>

-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예정인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191만 5,000가구)중 기존 지원을 받는 가구(73만 8,000가구)를 제외한 117만 7,000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통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인 바,
  - ①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의 기금사업으로 3,271억 1,100만원을 지원하고, ② 일반회계의 예산사업(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으로 245억 7,6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에 총 3,516억 8,8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검토됨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바, 지난 3월 18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회성 단년도 사업으로 관계법령 및 협의 운용지침 상 협의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이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한시성이 있고, 위원회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안 및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에는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예술분야 지원 대책 관련**

-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사업별설명서, p.129)
-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별설명서, p.132)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소관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은 코로나19로 취소된 세종문화회관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총 10개팀에 팀당 5,000만원 내외의 지원을 통해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제작 및 중계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소관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은 예술단체·예술인·기획자 등 총 225개 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작품당 2,000만원 내외의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5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으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와 스태프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예술작품 제작 지원”하는 등의 예산은 손실보전 성격의 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 관련 조례는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에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사료되나 재정적 손실 등에 따른 온라인 공연 및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향후에는 유사사례 발생을 대비하여 조례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사업별설명서, p.137)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소관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가 극심한 서울 소재 영세 여행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



## 간경상 사업보조 50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관련 법과 조례를 사업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 ① 관련 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만을 명시하고 있고, ② 관련 조례의 경우에는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 상품개발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피해가 극심한 서울소재 여행업체의 회복과 관련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중 보조금 지원기준을 금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직전연도 동일기간의 매출액 또는 직전연도 월매출 평균액 대비 75% 이상 감소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비 지출이 사실상 불가하나 여행업체로 지원된 민간보조금이 사업비 이외에 운영비성 경비로 지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조금 교부시 운영비성 경비로 지출이 불가하도록 용도의 사용금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정산검사도 이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9〉 시비 증액편성 사업현황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정책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200,000
복지정책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운영	24,576
안전총괄실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물품 구입	20,000
도시교통실	버스분야 감염 예방 대책	9,043
관광체육국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5,000
문화본부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	4,500
도시교통실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	3,922
노동민생정책관	시민체감형 코로나19 방역 확대 사업	2,454
노동민생정책관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2,356
경제정책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975
복지정책실	코로나19 대응 어르신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727
문화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500
복지정책실	코로나19 대응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비 지원	248
복지정책실	코로나19 대응 노숙인시설 방역비 지원	140

〈표 4-10〉 시비 증액편성 사업현황 (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기정예산	증 액	추가경정 예산안
노동민생정책관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전 출	19,000	46,200	65,200
노동민생정책관	서 울 신 용 보 증 재 단 출 연	9,000	3,665	12,665
여성가족정책실	어 린 이 집 운 영 지 원 ( 자 체 )	59,742	2,850	62,592
도시교통실	지 하 철 9 호 선 재 정 지 원	73,785	930	74,716
노동민생정책관	서 울 노 동 권 익 센 터 운 영	3,648	584	4,232
도시교통실	지 하 철 9 호 선 2·3 단 계 구 간 위 탁 운 영 관 리	18,008	278	18,286
노동민생정책관	전 통 시 장 공 동 배 송 서 비 스 운 영	595	183	778
복지정책실	종 합 사 회 복 지 관 운 영	94,513	154	94,668
도시교통실	우 이 신 설 도 시 철 도 재 정 지 원	3,212	140	3,353
도시교통실	장 애 인 콜 택 시 운 영	(X739) 59,437	96	(X739) 59,533
여성가족정책실	시 건 강 가 정 지 원 센 터 운 영	1,372	19	1,392

## V. 기타 검토의견

### □ 대부료 등의 감면에 따라 감소될 세외수입을 감액조정 하지 않은 사례

- 우리 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안 및 의결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부료 요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코로나19와 관련된 건의안을 제안 및 의결하여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경감 및 납부유예를 실시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
- 서울시도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공공재산을 임차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대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으로 확인되나,
  -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따라 감소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안을 통해 감액편성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시의회는 제출된 추경안의 범위 내에서만 감액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을 통해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따라 부족수납될 세외수입을 감액조정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 당초 세입예산액 보다 부족수납될 세외수입에 대해 세입예산을 경정하는 별도의 추경안을 통해 감액편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에 따라 감소될 세외수입을 감액조정 요청하지 않은 것은 조례 개정의 취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따라 지원대상 결정, 환급분 정산계획 수립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VI.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

-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관련법령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됨